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41호 2021. 8. 26.(목)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30호 홍사지구 받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 1
- 사천시 고시 제231호 장전2리 받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 2
- 사천시 고시 제23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 3
- 사천시 고시 제24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 4

##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1097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5
- 사천시 공고 제1100호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 ----- 6

##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1081호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
- 사천시 공고 제1082호 사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7
- 사천시 공고 제1083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3

회 람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41호

사천시 고시 제2021- 230호

## 홍사지구 받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사천시에서 시행 할 『홍사지구 받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 9조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26.

## 사 천 시 장

1. 사 업 명 : 홍사지구 받기반 정비사업
2. 위 치 : 곤양면 홍사리 홍사마을 일원
3. 사업의 목적 : 채소, 과수, 화훼 등 주 산단지의 집단화된 받을 대상으로 경작로 개설 및 정비, 요수개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가. 사업의 내용
    - 받기반정비 3ha
    - 농로확포장 L=532m, B=0.8~3.3m, 관정개발 1개소  
암거박스 L=18m 2.5m×2.0, 농업용 송수관로 L=1,212m, D=50mm
  - 나. 사업의 구역 : 곤양면 홍사리 홍사마을 일원
5. 사 업 비 : 500백만원
6. 사업기간 : 2021. 8. ~ 2023. 8.
7. 사업의 효과 : 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소 및 영농여건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
8.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사천시청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해당없음
10. 관계도서의 비치 및 열람장소 : 사천시청 건설과(전화 055-831-3278)

# 사 천 시 공 보

제741호

사천시 고시 제2021- 231호

## 장전2리 받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사천시에서 시행 할 『장전2리 받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26.

## 사 천 시 장

1. 사 업 명 : 장전2리 받기반 정비사업
2. 위 치 : 사천읍 장전리 장전2리마을 일원
3. 사업의 목적 : 채소, 과수, 화훼 등 주 산단지의 집단화된 받을 대상으로 경작로 개설 및 정비,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가. 사업의 내용
    - 받기반정비 6.6ha
    - 농로확포장 L=1,000m, B=3.5~4.0m, 관정개발 2개소  
용배수로 정비 L=800m H=0.7m~ 2.8m  
박스설치 2개소(2.0×2.0)
  - 나. 사업의 구역 : 사천읍 장전리 장전2리마을 일원
5. 사 업 비 : 1,000백만원
6. 사업기간 : 2021. 8. ~ 2023. 8.
7. 사업의 효과 : 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소 및 영농여건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
8.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사천시청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해당없음
10. 관계도서의 비치 및 열람장소 : 사천시청 건설과(전화 055-831-3278)

# 사 천 시 공 보

제741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239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8. 26.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 : 제2021- 4호
2. 점용·사용 허가 연월일 : 2021년 8월 12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동력수상기구 접안용 관리사 및 휴게음식점
4. 점용·사용의 장소
  - 사천시 송포동 1344-1번지선 일원
5. 점용·사용의 면적 : 986.4㎡(직접 504㎡, 간접 482.4㎡)
6. 점용·사용의 기간 : 2021년 3월 13일 ~ 2026년 12월 31일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문지연
  - 나. 주 소 : 사천시 상강청길 14, 104동 1004호

# 사 천 시 공 보

제741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240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8. 26.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21-4호(2021. 8. 12.)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문지연
  - 주 소 : 사천시 상강청길 14, 104동 1004호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동력수상기구 접안용 관리사 및 휴게음식점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송포동 1344-1번지선 일원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 신고번호 : 제2021-6호
  - 공사기간 : 2021. 8. 13. ~ 2021. 9. 30.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 2021. 8. 13.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41호

사천시 공고 제2021 -1097호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 8. 26.

##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1. 8. 26. ~ 2021. 9. 9.(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19조 2485	SM3	권*름	2021.8.23	차량 분실로 인해 운행정지 요청함.

#### 4. 공 고 내 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 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민원교통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41호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9.8>

##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

사천시 공고 제2021 - 1100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사 천 시 장 (직인)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김용진		
	대표자 (성명)	김용진	주소	사천시 곤양면 곤북로 25
소하천명		한재골천		
공사 (점용·사용)개요	위치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375-2번지 일원		
	면적	1.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1.08.26. ~ 2025.08.25.		
	목적 및 사유	배수관로 설치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 및 관련서류 1부(건설과 비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 천 시 공 보

제741호

사천시 공고 제2021 - 1081호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사항(2019.7.16.)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부조리 신고 대상 확대(안 제2조)
  - (기존) 공무원, 상근인력
  - (변경)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신고방법 중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고’를 ‘홈페이지’로 변경(안 제3조)



# 사 천 시 공 보

제741호

##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http://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

-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전화 : 831- 2226, FAX : 831- 6012

# 사 천 시 공 보

제741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74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사천시 소속 공무원과 상근인력(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공무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등”으로 한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나.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근로자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제1항 중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고”를 “홈페이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신변보호)”를 “(신고자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등”으로, “신분노출”을 “신분 노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등”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41호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u>&lt;신 설&gt;</u></p> <p>1.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이란 <u>사천시 소속 공무원과 상근인력(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하 “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u></p> <p>2. “부조리 행위”란 <u>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u></p>	<p>제2조(정의) ----- -----.</p> <p>1. <u>“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u>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u></p> <p><u>나.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근로자</u></p> <p><u>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u></p> <p>3. ----- <u>공무원등</u>----- ----- -----.</p> <p>2. ----- <u>공무원등</u>----- ----- -----</p>

다.

가.·나. (생략)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3조(신고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시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고,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7조(신변보호) ① (생략)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공무원등  
-----  
-----

제3조(신고방법) ① -----  
-----  
----- 홈페이지  
지-----  
-----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신고의 처리) ① 사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신고자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제8조(보복행위 금지) ① (생략)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공무원등-----

----- 신분노출-----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보복행위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무원등-----

<삭제>

# 사 천 시 공 보

제741호

## 관 련 법 규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82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



# 사 천 시 공 보

제741호

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개정 2019. 4. 16.>

# 사 천 시 공 보

제741호

사천시 공고 제2021 - 1082호

「사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감사 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을 제21조제1항으로 변경
- 주민감사 청구연령 및 청구인수 기준 조정(안 제2조)
  - 주민감사 청구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15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

# 사 천 시 공 보

제741호

##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http://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

-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전화 : 831- 2226, FAX : 831- 6012

# 사 천 시 공 보

제741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74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감사 청구 주민의 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연서하여야 하는 19세”를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로,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 150명”을 “100명”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한 주민감사청구인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u>연서하여야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u></p> <p>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감사 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 100명 -----.</p> <p>&lt;삭 제&gt;</p>

# 사 천 시 공 보

제741호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사 천 시 공 보

제741호

사천시 공고 제2021 - 1083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2021.1.12.) 및 같은 법 시행령(신설 2021.7.6.)의 신설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 및 시행령 조문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안 제9조의3)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조치기간 설정
- ⇒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3년 이내 반영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도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http://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 741 호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청(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Tel : 831-3166, FAX : 831-6033)

# 사 천 시 공 보

제741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74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제3절에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u>제9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u>

# 사 천 시 공 보

제741호

## 관 련 법 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12.>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본조신설 2021. 7. 6.]